

「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

1. 제정이유

「간호법」 제14조제1항제2호 및 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」 제정에 따른 동 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·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(안 제1조)

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·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

나. 교육과정의 구분 등(안 제2조 및 별표1·2)

교육과정을 공통 과정, 분야별 과정,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함

과정별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로 정하고, 운영기관의 장이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·과목·내용 등을 정할 때 참고할 예시는 별표 2로 제시함

다. 교육과정의 실시 방법(안 제3조)

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함
이론교육은 집합교육·실시간 화상교육·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되, 감염병 유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과목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없도록 함

실기교육은 모의 실습·시뮬레이션 등으로,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무연수(OJT)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

라.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의 운영 등(안 제4조 및 별표3)

공통·분야별·현장실습 과정이 연계되도록 운영하고,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운영기관의 장에게 교육계획·이수·평가·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·보존 의무를 부여함

현장실습 과정의 운영 준수사항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3으로 정함

마. 교육과정의 이수 등(안 제5조)

공통·분야별·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이수 결정을 받은 자 등을 이수자로 봄

평가 항목을 기초지식·수행 역량·현장실습 성취도로 구분하고, 평가방법으로 필기시험·실기시험 및 직접관찰평가 등을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행정예고(2026. 7. 2. ~ 7. 21.)

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

「간호법」 제14조제1항제2호 및 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「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
보건복지부장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간호법」 제14조제1항제2호, 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 관한 이수 과목,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의 구분 등) ① 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(이하 “교육과정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공통 과정 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.

가.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한 공통 사항

나. 그 밖에 「간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(이하 “진료지원업무”라 한다)의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2. 분야별 과정 :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제1호의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가.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분야별 사항

나. 그 밖에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
별로 필요한 지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3. 현장실습 과정 :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절차를
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방법(이하 “현장실습교육”이라 한다)으로 실
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
은 별표 1과 같다.

③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(이하 “교육과정 운영기관”
이라 한다)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과정(이하 “분야별 과정”이라
한다)의 세부 분야, 과목,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
과정의 세부 분야, 과목 및 내용 등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정하되, 별표 1을
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교육과정의 실시 방법)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과정(이하
“공통 과정”이라 한다) 및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으로
실시한다.

② 이론교육은 집합교육, 실시간 화상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식으로
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이론교육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유행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
유가 없는 한 전체 교육과목을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없다.

③ 실기교육은 「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」 별표에 따
라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, 모의 실습, 시뮬레이션
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④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무연수(On the Job Training) 또는 이에 준하는
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) 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진료지

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(이하 “교육 대상자”라 한다)가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을 이수한 후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과정(이하 “현장실습 과정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공통 과정,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이 연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 3을 준수하여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교육기관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계획
2. 교육과정의 과목·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. 교육 대상자의 명단 및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
4. 공통 과정,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의 이수에 관한 사항
5. 제5조제2항의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
6.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확인서의 작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5조(교육과정의 이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1. 공통 과정,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제2

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이수 결정을 받은 자

2. 보건복지부령 제000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부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다만,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

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.

1.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
2. 진료지원업무 수행 역량
3.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등

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 방법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제2항제1호의 사항 : 필기시험(교육 대상자가 시험장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 등을 검정(檢定)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)
2. 제2항제2호의 사항 : 실기시험(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등을 모의 실습 또는 실기 등의 방식으로 검정(檢定)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)

④ 제2항제3호의 평가 방법은 별표 3 제3호와 같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과목 및 시간(제2조제2항 관련)

1. 공통 과정

가. 공통 과정의 교육과목·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.

방법	교육과목 및 내용		최소 이수시간
1) 이론 교육	가)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및 이해		40시간 이상
	세부 주제	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관련 법·제도 이해	
		전담간호사의 전문역량 및 협업 역량	
		환자·보호자,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협업	
	나)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		
	세부 주제	환자 상태 평가 및 건강사정의 이해	
		주요 질환의 병태생리 및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	
		주요 약물의 약리 및 투약 관련 이해	
		주요 검사 및 검사 결과 이해에 관한 지식	
	다)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		
	세부 주제	진료기록 및 처방 지원 업무 작성 원칙 및 방법	
실기교육 관련 시술 및 처치 지원 관련 절차 및 지식			
라) 환자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			
세부 주제	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		
	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·관리		
	중증 환자 검사·이송 시 환자상태 평가 및 응급상황 대응		
마)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			
2) 실기 교육	가)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		40시간 이상
	세부 주제	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	
	나) 기록 및 처방 지원		
	세부 주제	진료기록 초안 작성	
		검사·판독 및 협진·전원 의뢰 초안 작성	
수술·시술 및 검사·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			
소견서·진단서 초안 작성			

방법	교육과목 및 내용		최소 이수시간
		프로토콜 하 검사·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	
	다) 의료용 관 관리		
세부 주제	비위관(L-Tube, NG-Tube) 등의 삽입·교체		
	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(누공삼관된 배액관, 위루관, 방광루관, J-P drain, Hemovac 등을 포함한다)의 세척·제거		
	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제거		
	라) 상처·장루·욕창 관리		
세부 주제	복합 드레싱(Catheter, Tube, 수술부위 드레싱 등)		
	위루·장루·방광루 등의 드레싱		
	3단계 욕창 드레싱		
	마)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		
세부 주제	호흡치료(Respiratory Therapy) (다만, 호흡 재활치료를 제외한다)		
	바) 침습적 시술 및 처치		
세부 주제	동맥혈 천자		
	피부 봉합(Skin Suture)·매듭 및 봉합사 제거		
	사) 응급상황 대응 및 감염관리		
세부 주제	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수행		
	응급대응체계 적용		

나. 교육 대상자가 공통 과정을 이수하려면, 그 이수시간이 가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2. 분야별 과정

가. 분야별 과정의 교육과목·내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.

방법	교육과목 및 내용	최소 이수시간	
이론 교육 및 실기 교육	1) 호흡기계 처치		
	세부 주제	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인공호흡기 설정 (압력 조절, 산소농도 조절, 양압 조절 등을 포함한다)	4시간 이상
	2) 혈관 시술 및 처치		
	세부 주제	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	2시간 이상
		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	2시간 이상
		말초동맥관(A-line) 삽입	2시간 이상
	3) 외상 후 근골격계 고정		
	세부 주제	외상 후 석고붕대(Cast, 통깁스)	4시간 이상
		외상 후 부목 (Splint, 반깁스)	
	4) 상처 관리		
	세부 주제	흡인 드레싱	2시간 이상
		피하조직의 절개(Incision) 및 배농(Drainage)	2시간 이상
	5) 비뇨기계 처치		
	세부 주제	방광 내 BCG 주입	2시간 이상
		전립선 마사지	
		직장수지검사	
	6) 분만 중 검진		
	세부 주제	분만과정 중 내진	4시간 이상
	7) 순환보조 및 장치운영 지원		
	세부 주제	개흉심장마사지 보조 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 (ECMO, VAD, IABP 등) 운영 지원	4시간 이상
8) 수술 및 환자 마취 과정 지원			
세부 주제	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·예진	8시간 이상	
	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		
	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		
	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	4시간 이상	
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			
9) 심장혈관흉부·순환기 시술 및 처치			
세부 주제	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장비(ECMO, VAD, IABP 등)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(심장, 폐, 간 등)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	16시간 이상	

나.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, 과목,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) 세부주제 관련 주요 진료과목
- 2) 세부주제 관련 진료지원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
- 3) 세부주제 관련 환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관한 사항
- 4) 세부주제별 질환 및 치료의 특성에 관한 사항
- 5) 환자의 안전 및 시술·처치의 위험도에 관한 사항
- 6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다. 분야별 과정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실기교육의 방법만으로 실시할 수 없다.

라.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) 세부주제와 관련된 주요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
- 2) 세부주제별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절차
- 3)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
- 4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분야별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마. 분야별 과정의 실기교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분야별 교육의 이론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실시한다.

바. 교육 대상자가 분야별 과정을 이수하려면, 그 이수시간(교육과목 또는 세부주제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산정한다)이 과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론교육 시간은 최소 이수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
3. 현장실습 과정

가. 현장실습 과정의 교육과목 및 최소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.

방법	교육과목	최소 이수시간
현장실습 교육	현장실무연수(On the Job Training)	200시간 이상

나. 현장실습 과정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(이하 “현장실습 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별표 3 제2호라목에 따라 지정된 현장실습 책임자의 지도·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

다. 교육 대상자가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하려면, 그 이수시간이 가목의 표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

[별표 2]

분야별 과정의 예시 (제2조제3항 관련)

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 과정의 세부 분야, 과목, 내용 및 이수시간 등을 정할 경우 다음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.

구분	교육과목	교육방법	세부 주제 및 내용	최소 이수시간
1	중환자·응급·호흡기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증·응급 질환의 관리 - 중증·응급 약물 및 장비 관리 - 인공호흡기 및 호흡치료의 이해 	27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 - 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 - 말초동맥관(A-line) 삽입 - 흡인 드레싱 - 인공호흡기 설정 (압력 조절, 산소농도 조절, 양압 조절 등을 포함한다) - 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(ECMO, VAD, IABP 등) 운영 지원 - 직장수지검사 -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- 외상 후 부목 (Splint, 반깁스) 	27시간 이상
2	수술의 이해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술 전·중·후 관리 - 계통별 수술과정의 이해 - 수술장비의 관리 - 마취 모니터링 	28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·예진 -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-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-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-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	10시간 이상
3	내과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과계 검사의 이해 - 계통별 내과 질환의 관리 - 중앙환자관리 	35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 - 흡인 드레싱 	6시간 이상

구분	교육과목	교육방법	세부 주제 및 내용	최소 이수시간
4	외과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과계 검사의 이해 - 계통별 외과 질환의 관리 - 수술 전·후 관리 	31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 - 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 - 흡인 드레싱 - 피하조직의 절개(Incision) 및 배농(Drainage) - 외상 후 석고붕대(Cast, 톱깍스) - 외상 후 부목 (Splint, 반깍스) - 방광 내 BCG 주입 - 전립선 마사지 - 직장수지검사 - 분만과정 중 내진 	18시간 이상
5	심장혈관흉부·순환기 질환의 진단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장혈관흉부·순환기 검사의 이해 - 심장혈관흉부·순환기 질환별 관리 - 심장혈관흉부·순환기 장비 및 약물 관리 	29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 - 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 - 말초동맥관(A-line) 삽입 - 흡인 드레싱 - 인공호흡기 설정 (압력 조절, 산소농도 조절, 양압 조절 등을 포함한다) -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- 프로토콜 하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(ECMO, VAD, IABP 등) 운영 지원 	24시간 이상
6	신경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경계 검사의 이해 - 신경계 질환의 관리 - 신경계 기능평가 및 위험요인 관리 	30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 - 중심정맥관(C-line, PICC) 조영제 투여 - 흡인 드레싱 - 말초동맥관(A-line) 삽입 - 피하조직의 절개(Incision) 및 배농(Drainage) - 인공호흡기 설정 (압력 조절, 산소농도 조절, 양압 조절 등을 포함한다) 	16시간 이상
7	신생아집중·소아청소년 질환의 진단 및 관리	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위험신생아 질환별 관리 - 소아청소년 질환별 관리 	31시간 이상
		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관절개관(T-tube) 제거 - 의료용 관(Tube, Catheter) 및 관련 기구의 교체 - 말초동맥관(A-line) 삽입(추가) - 인공호흡기 설정 (압력 조절, 산소농도 조절, 양압 조절 등을 포함한다) 	10시간 이상

[별표 3]

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및 평가방법 등

(제4조제4항 및 제5조제4항 관련)

1. 기본 원칙

- 가. 현장실습 과정은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절차를 실제 진료지원업무 수행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운영한다.
- 나. 현장실습 기관은 교육 대상자가 이수한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다.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평가는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반복이 아닌 실제 진료현장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2.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체계

- 가.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행위의 특성 및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를 선정·관리한다.
- 나.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 수행 횟수 및 제3호 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다. 현장실습교육 대상 행위는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.
- 라.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마. 현장실습 기관의 장 및 현장실습 책임자는 현장실습교육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- 바. 그 밖에 현장실습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3.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의 평가

가.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의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- (1) 직접관찰평가(Direct Observation)
- (2) 술기평가(DOPS, Direct Observation of Procedural Skills)
- (3) 사례기반 평가(Case-based Assessment)
- (4) 시뮬레이션 평가(Simulation-based Assessment)
- (5) 기록기반 평가(Chart Audit)
- (6) 임상수행 평가(Mini-CEX, Mini Clinical Evaluation Exercise)
- (7) 다면평가(Multi-source Feedback, 360-degree Evaluation)
- (8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

나. 가목의 평가는 수행 행위의 특성 및 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목(1)부터 (8)까지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4.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마련

가. 현장실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.

- (1) 제2호가목에 따른 현장실습 대상 행위의 선정·관리에 관한 사항
- (2) 제2호라목에 따른 현장실습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(3) 제2호마목에 따른 현장실습교육 수행기록의 작성·보존에 관한 사항
- (4) 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수행 성취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

나. 가목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내용은 법, 규칙, 이 고시 및 제2호바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